

□ 관련기관 협의내용

- 개발사업 고시문
- 원인자부담금 협의문서
- 기타 공문

개발사업 고시문

1. 주택건설사업(신관동 산 32-37)
2. 국민임대주택건설(신관(6)지구)
3. 금학e-편한세상 공동주택사업
4. 월송택지개발
5. 신금택지개발
6. 유구공동주택
7. 유구온천지구
8. 곰나루유원지
9. 문화관광단지

“활짝 열린 시정, 함께 뛰는 시민”



공주시



수신자 (주)대유피앤디 대표 김기두 (서울 서초 서초동 1545-8 동원빌딩4층)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교부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귀사가 민원 제763호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 하오니,
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이행사항(승인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래의 제세공과금을 납부 하시고 승인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면허세 : 건축-30,000원, 개발행위-30,000원
- 국민주택채권 : 18,605,000원
- 지역개발공채(개발행위) : ~~66,140,000원~~ 63,220,000원
- 공사이행보증금 : ~~376,380,000원~~ -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개발행위 - ~~333,940,000원~~, 산지복구비-42,449,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9,822,230원

- 붙 임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부.(별송)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1부.(별송)

공주시장

★지방건축주사보

주책담당

도시건축과장

산업건설국장

부시장

시장

협조자

지방도목주사보

도시계획담당

도시행정담당

시행 도시건축과-@N 10182 (2006.07. 7) 접수

우 345-70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472 /전송 041)840-2167

/ jbc5288@hanmail.net

/ 공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함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충남 공주시 도시건축과 제2006-03호				
상 호	(주)대윤피앤디	등 록 번 호	서울- 주택 2005-0303		
대 표 자	김 기 두	법인등록번호	110111-3359620		
영업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5-8 동원빌딩 4층				
대 지 위 치	공주시 신민동 산32-37번지외 73필지	대 지 면 적	22,739.0000㎡		
건 축 면 적	6,684.2840㎡	건 폐 율	29.39%		
연 면 적	59,345.7720㎡	용 적 율	215.83%		
동수(주/부)	6 / 8	세 대 수	389세대		
주 택 형 별	33A평형-138세대 33B평형-133세대, 45평형-92세대, 52평형-26세대		총 사 업 비	97,974,939천원	
착공 예정일	2006.08.		사용검사에정일	2009.01.	
동 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 면 적(㎡)	동 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 면 적(㎡)
1	101동	4,557.5200	201	지하주차장-1	3,067.9650
2	102동	6,451.0320		전기실	130.1510
3	103동	9,785.8720		발전기실	41.2500
4	104동	9,769.6680		펌프실	112.5000
5	105동	8,253.9730	202	지하주차장-2	3,247.3090
6	106동	9,573.4750	301	휘트니스센타	221.1490
소계	6 동	48,391.5400	203	지하주차장-3	3140.4140
			302	관리·경로당	305.9700
			303	경비실	7.2900
			304	경비실	7.2900
			401	근린생활시설	672.9440
			소계	8 동	10,954.2320
변 경 사 항					

2006년 7월 7 일

공 주 시 장



충청남도



수신자 공주시장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주신관(6)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보

대한주택공사가 신청한 우리도관내 공주시 신관동 산30-21번지 일원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이 통보되어 알리오니 동사업과 관련 협의기관 및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시책사업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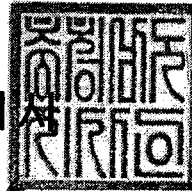
- 승인내역 -

사업주체	대지위치	건립개요	평형별세대수	비고
대한주택공사	공주시신관동산30-21 번지일원	국민임대아파트 13-15층 5개동 517세대	39㎡형 149세대 41㎡형 225세대 46㎡형 143세대	

붙임 : 1. 사업계획승인서 1부

2. 승인조건 및 사업자준수사항 1부 끝.

충청남도지



주택도시과장: 권택주 042-802-4241

지방건축주사

정연창

주택담당

주택도시과장

평가

건설교통국장

전결 10/11

협조자

지방건축주사

윤영산

시행

주택도시과-8604

(2004.10.12.) 접수

도시건축과-9427

(2004.10.12.)

우 301-763

대전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287) 충청남도도청 주

택도시과 / http://chungnam.net

전화 042-251-2782

/전송 042-220-3469

/ jongyc@chungnam.net

/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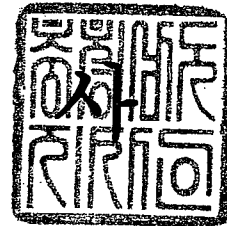
착공신고필증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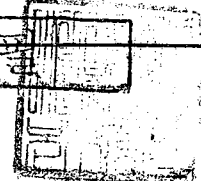
건축구분	신축	승인번호	국민임대06-20
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	법인(주민)등록번호	114671-0001381
대지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산 30-21번지 일원		
대지면적(m ²)	25,240.80m ² (사업면적 : 37,020.70m ²)		
건축물 명칭	공주신관(6)지구 국민임대주택	주용도	국민임대 아파트
건축면적(m ²)	2,940.490m ²	건폐율(%)	11.65
연면적(m ²)	38,001.703m ²	용적율(%)	134.17
착공 예정일	2006.08.31		

2006. 09. 01.

충청남도지



원본대조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내용

구 분			1차보완	2차보완	증감	비 고
대지면적			20,817.00	20,817.00		
연 면 적			59,208.8661	59,358.3700	+ 149.5039	
지상연면적			45,685.6767	45,699.4605	+ 13.7838	
지하연면적			13,523.1894	13,658.9095	+ 135.7201	
용적율산정면적			45,410.5584	45,460.5005	+ 49.9421	
건축면적			4,831.9547	4,834.3192	+ 2.3645	
건폐율			23.21%	23.22%	+ 0.01	
용적율			218.14%	218.38%	+ 0.24	
규 모			지하2층, 지상18층	지하2층, 지상18층		
공 급 면 적	101	115A	115.6657	115.6860	+ 0.0203	34세대
		114B	114.5431	114.5615	+ 0.0184	26세대
	102	114C	114.9097	114.9183	+ 0.0086	34세대
		113D	113.7872	113.7939	+ 0.0067	28세대
	103	113E	113.7907	113.7993	+ 0.0086	36세대
		112F	112.6683	112.6750	+ 0.0067	33세대
	104	115G	115.2873	115.2959	+ 0.0086	34세대
		114H	114.1647	114.1714	+ 0.0067	27세대
	105	109I	109.2586	109.2607	+ 0.0021	33세대
		158J	158.9595	159.2104	+ 0.2509	36세대
	106	114K	114.2776	114.2862	+ 0.0086	28세대
		113L	113.1552	113.1619	+ 0.0067	32세대
	계		44,969.2940	44,981.5041	+ 12.2101	381세대
주 차 장	지상		117대	117대		
	지하		361대	361대		
	계		478대	478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함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인번호	충남 공주시 도시건축과 제2006-01호(3차변경)				
상호	수석산업개발(주)	등록번호	충남 주택2004-0021		
대표자	오종철	법인등록번호	160111-0117790		
영업소재지	충남 공주시 금성동 178-7번지				
대지위치	공주시 금학동 69번지외97필지	대지면적	28,400.0000㎡		
건축면적	4,961.0111㎡	건폐율	17.4683%		
연면적	82,212.4038㎡	용적율	219.3050%		
동수(주/부)	9 / 6	세대수	476세대		
주택형별	34평형-317, 35평형-34, 45평형-30, 51평형-34, 57평형-61세대	총사업비	119,108,380천원		
착공예정일	2006.05. 22.	사용검사에정일	2008.12.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1	101동	8,732.2949	10	관리·노인	369.7900
2	102동	8,280.6390	11	지하주차#1	9,424.2551
3	103동	5,916.9632		주민공동시설	196.8667
4	104동	4,491.4950	12	지하주차#2	9,747.2546
5	105동	3,962.4945		주민공동시설	162.0381
6	106동	4,511.8580		전기,기계,발전	399.3750
7	107동	12,473.2738	13	가스기계	57.6
8	108동	10,206.8570	14	경비실1	9.0043
9	109동	3,261.3403	15	경비실2	9.0043
변경사항		- 107동 기초형식 변경 (PILE 기초 ⇒ PILE기초+지내력기초)			
2007년 2월 14일 공주시장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66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29(2007.1.4)호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공주월송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 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전화 : 041-840-2445)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전화 : 042-602-4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 3.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1) 명 칭 :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월송동 일원
- 3) 면 적 : - 기정 502,451㎡
 - 변경 504,005㎡
 - 증감 중) 1,554㎡
 - 변경사유 : 지적경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 2) 소재지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 3) 성 명 : (기정) 한 행 수
(변경) 박 세 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73	3,302	8,884	9,245	
단독주택	79	59	221	165	
공동주택	3,094	3,243	8,663	9,080	국민임대포함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점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

- 기정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으로 결정
- 변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22개 노선, 연장 6,141m, 면적 114,464㎡

- 변경 : 20개 노선, 연장 5,941m, 면적 122,360㎡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5개 노선, 연장 803m, 면적 7,344㎡

·변경 : 13개 노선, 연장 833m, 면적 7,444㎡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3개소, 3,538㎡

·변경 : 2개소, 3,58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연 도 별(천㎡)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용 지	기정	502	302				
	변경	200	304				
보 상	기정	504	304				
	변경	200	304				
조 성	기정	502	52	150	150	150	
	변경	504		204	150	150	
공 사							

(단위 :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기정	2,127	477	822	276	276	276	
	변경	2,412	497	786	450	353	326	
용지비	기정	1,202	477	725				
	변경	1,243	497	746				
조성비	기정	925		97	276	276	276	
	변경	925			373	276	276	
간접비	기정	-	-	-	-	-	-	
	변경	244		40	77	77	50	

○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 수 일: 2007년 1월 4일

○ 준공예정일: 2011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02,451	504,005	100.0	100.0	
소 계	183,245	183,761	36.5	36.4	3,302세대
주 택 건 설 용 지	18,419	14,726	3.7	2.9	59세대
공 동주 택용 지	164,826	169,035	32.8	33.5	3,243세대
준 주 기 용 지	24,322	23,752	4.8	4.7	
소 계	294,884	296,492	58.7	58.9	
도 로	121,808	129,804	24.3	25.8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주 차 장	3,538	3,588	0.7	0.7	
공 원	87,108	95,601	17.3	19.0	근린공원 (저류시설 7,000㎡포함)
안충녹지	28,772	26,599	5.7	5.3	
광 장	2,926	3,362	0.6	0.7	
학 교	23,644	23,724	4.7	4.7	초, 중
종교시설	4,017	4,017	0.8	0.8	
오수중계펌프장	1,584	225	0.3	-	
하수처리시설	12,970	-	2.6	-	
방상통신시설	8,517	9,572	1.7	1.9	

공공
시설
용지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규모	블록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 면적 (㎡)	층수	비고
총계	기정	183,245	3,173	8,884	-	-	-	2.8인/호
	변경	183,761	3,302	9,245	-	-	-	
단독주택	기정	18,419	79	221	-	233	-	
	변경	14,726	59	165	-	250	-	
공동주택	기정	164,826	3,094	8,663	-	-	-	
	변경	169,035	3,243	9,080	-	-	-	
60㎡이하	소계	73,474	1,694	4,743	-	-	-	국민임대
	A-1	73,367	1,794	5,023	-	-	-	
A-2	기정	19,686	454	1,271	160	65	-	
	변경	19,613	479	1,341	160	65	20층	
60~85㎡	기정	53,788	1,240	3,472	160	65	-	
	변경	53,754	1,315	3,682	160	65	20층	
85㎡초과	소계	56,372	930	2,604	-	-	-	
	B-1	56,324	923	2,584	-	-	-	
B-2	기정	28,846	476	1,333	180	110	-	
	변경	28,986	474	1,327	180	110	20층	
C	기정	27,526	454	1,271	180	110	-	
	변경	27,338	449	1,257	180	110	20층	
	소계	34,980	470	1,316	-	-	-	
	변경	39,344	526	1,473	-	-	-	
	기정	34,980	470	1,316	200	150	-	
	변경	39,344	526	1,473	200	150	20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분	종목	구분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일반 도로	합계	계	소계	-	-	37	33	6,944	6,774	121,808	129,804	
				-	-	22	20	6,141	5,941	114,464	122,360	
				-	-	4	4	1,736	1,752	51,145	53,643	
	대로	1	35	35-38	1	1	316	320	11,112	11,573		
		2	30	30-36	2	2	869	881	26,193	28,237		
		3	25	25-28	1	1	551	551	13,840	13,833		
	중로	소계	-	-	7	6	2,769	2,789	49,124	54,168		
		1	20	20-25	4	3	1,842	1,845	37,013	40,268		
		2	15	15-18	1	1	310	310	4,672	5,349		
	소로	3	12	12-15	2	2	617	634	7,439	8,551		
		소계	-	-	11	10	1,636	1,400	14,195	14,549		
		1	10	11	4	8	520	993	5,225	11,168		
보행자 전용 도로	2	8	8	7	2	1,116	407	8,970	3,381			
	소계	-	-	15	13	803	833	7,344	7,444			
	1	10	10	4	4	460	491	4,600	4,905			
	2	8	8	11	6	343	243	2,744	1,949			
			3	6	6	-	3	-	99	-	590	

○ 주차장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합계	기정	-	3,538	
	변경	-	3,588	
주차장	기정	공주시 금홍동 산37-1임 일원	1,577	노의 주차장
	변경	공주시 금홍동 산37-8임 일원	3,263	
	기정	공주시 금홍동 산37-5임 일원	1,373	
	변경	공주시 월송동 535-1잠 일원	325	
	폐지	공주시 월송동 산45임 일원	588	

○ 공원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	87,108	
	변경	-	95,601	
근린공원	기정	소계	85,092	
	변경	소계	95,601	
	기정	공주시 금홍동 산45-11임 일원	60,445	
	변경	공주시 금홍동 산45-11임 일원	70,748	
	기정	공주시 월송동 산47임 일원	24,647	저류시설 (7,000m ²) 포함
어린이공원	변경	공주시 월송동 산47임 일원	24,853	
	기정	공주시 월송동 552-2담 일원	2,016	
	변경	-	-	폐지

○ 광장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	2,926	
	변경	-	3,362	
광장	기정	공주시 금홍동 254-5전 일원	1,512	
	변경	공주시 금홍동 254-6담 일원	1,347	
	기정	공주시 월송동 산53-2임 일원	1,414	
	변경	공주시 월송동 552-2담 일원	2,015	

○ 녹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	28,772	
	변경	-	26,599	
완충녹지	기정	공주시 금홍동 264-1담 일원	1,979	
	변경	공주시 금홍동 264-1담 일원	2,325	
	기정	공주시 금홍동 247담 일원	809	
	변경	공주시 금홍동 247담 일원	986	
	기정	공주시 금홍동 249전 일원	2,913	
	변경	공주시 금홍동 249전 일원	2,252	
	기정	공주시 월송동 산53-2임 일원	4,793	
	변경	공주시 월송동 산53-2임 일원	4,488	
	기정	공주시 금홍동 246-7대 일원	2,442	
	변경	공주시 금홍동 246-7대 일원	2,636	
	기정	공주시 금홍동 251-5잠 일원	1,429	
	변경	공주시 금홍동 251-5잠 일원	1,158	
	기정	공주시 금홍동 산39임 일원	1,235	
	변경	공주시 금홍동 산39임 일원	1,188	
	기정	공주시 월송동 산42-2임 일원	9,884	
	변경	공주시 월송동 산42-17임 일원	8,665	
	기정	공주시 월송동 491담 일원	1,261	
	변경	공주시 월송동 491담 일원	1,203	
	기정	공주시 월송동 546임 일원	2,227	
	변경	공주시 월송동 546-1임 일원	1,698	

○ 교육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기정	-	23,644	
	변경	-	23,724	
초등학교	기정	공주시 월송동 544-1담 일원	11,512	
	변경	공주시 월송동 544-1담 일원	11,615	
중학교	기정	공주시 월송동 539전 일원	12,132	
	변경	공주시 월송동 539전 일원	12,109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호	위 치	면적(㎡)	비 고
종교	계	-	4,017	
	1	광주시 금흥동 242전 일원	2,036	
	2	광주시 월송동 산46임 일원	1,981	

○ 오수중계펌프장 계획

구 분	변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4,554	
	변경	-	225	
	소계	-	225	
오수중계펌프장	기정	1 광주시 월송동 513-3임 일원	1,584	
	변경	1 광주시 월송동 513-6임 일원	225	
	기정	1 광주시 금흥동 202답 일원	12,970	
하수처리시설	변경	-	-	폐지

○ 방충통신시설 계획

구 분	변 호	위 치	면적(㎡)	비 고
방충통신시설	기정	1 광주시 금흥동 262-1대 일원	8,517	
	변경	1 광주시 금흥동 262-1대 일원	9,572	

4)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변 호	위 치	면적(㎡)	비 고
준주거용지	기정	1 광주시 금흥동 산37-1임 일원	24,322	
	변경	1 광주시 금흥동 산37-8임 일원	23,75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변경분)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전화 : 041-840-2445)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전화 : 042-602-4275)에 비치

2.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공주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 2) 면 적 : 504,005㎡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 3) 대표자의 성명 : 박 세 흡

라. 사업시행기간

- 1) 사업시행기간 : 2007.1.4 ~ 2011.12.31
- 2) 공정별 소요기간 : 개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 : 불 임(도면개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내용 : 불 임(도면개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 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재재생략(예 정지구 지정변경과 동일)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가. 공주시
- 나. 공주월송지구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2) 주차장
- 나. 공간시설
 - 1) 광장
 - 2) 공원
 - 3) 녹지
 - 4) 공공공지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1) 학교
- 라. 유통 및 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 마. 방재시설
 - 유수지
- 바.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 (S=1:5,000)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S=1:5,000)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200)

충청남도

수신자 공주시장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통보

1.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부터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기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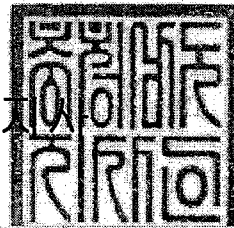
2. 관계도서를 귀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기 바라며, 관련기관 협의조건 및 인가조건 등을 이행 하도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가. 고시문 1부

나. 예정지구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서 1부(별송)

다. 인가조건 1부 “끝”

충청남도



지방시설주사보 김권수 도시개발담당 이현우 건설정책과장 박영수 건설교통국장 전결 10/12 전병욱

협조자 지방시설주사보 김홍여 지방시설주사 김성겸 지방시설주사 김영기

시행 건설정책과-11304 (2007.10.12.) 접수 도시건축과-21059 (2007.10.15.)

우 301-763 대전 중구 중앙로 충청남도도청

전화 042-251-2446 /전송 042-220-3449 / kjs1960@chungnam.net / 공개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공주시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인구(인)	계획호수(호)	비고
기정	계	2,415	805	3.0인/호 단독 : 공동 36.5% : 63.5%
	단독주택	240	80	
	공동주택	2,175	725	
변경	계	2,811	831	3.0인/호 단독 : 공동 47.4% : 52.6%
	단독주택	636	106	
	공동주택	2,175	725	

4.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2. 07.26(개발계획 승인일) ~ 2008. 09. 30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230,096	230,096	100.0	100	변경없음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69,320	86,308	30.2	37.5	증)18,271m²
	단독 주택	19,291	30,280	8.4	13.2	증)11,219m²
	공동 주택	33,560	33,560	14.6	14.6	변경없음
	준 주 거	16,469	22,468	7.2	9.8	증)7,052m²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60,776	143,788	69.8	62.5	감)18,271m²
	도 로	76,608	85,333	33.3	37.1	증)7,383m²
	주 차 장	1,447	2,224	0.6	1.0	증) 836m²
	공 원	1,632	3,933	0.7	1.7	증)2,301m²
	녹 지	2,345	3,549	1.0	1.5	증)1,204m²
	공 공 공 지	11,061	11,061	4.8	4.8	변경없음
	공 공 청 사	32,184	32,184	14.0	14.0	변경없음
	학 교	30,127	-	13.1	-	감)30,127m²
	사회복지시설	-	132		0.1	증)132m²
	종 교 시 설	983	983	0.4	0.4	변경없음
	하 천	730	730	0.3	0.3	변경없음
	유 수 지	3,353	3,353	1.5	1.5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306	306	0.1	0.1	변경없음

수신자
공주시청 (에너지) 전악은 생활화 합니다.



공 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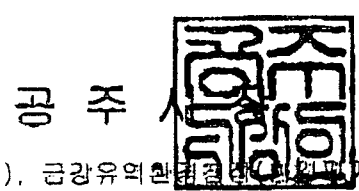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충남 천안시 둔당동 697번지 메트로프라자빌딩 403호 (주)다인 대표 윤금덕으로부터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부, 끈.



수신자 공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공주소방서장(방호예방과장),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장,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점장(영업과장), (주)케이티공주지점장, 정보통신실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기업유치과장, 지적과장, 미래도시팀장, 마케팅팀장, 건설과장, 산림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유구읍장

★지방시청주사보 이성현 주역담당 이장호 도시건축과장 전강 09/16 노평중

협조자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함

사 업 구 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 인 번 호	충남 공주시 도시건축과 제2008-01호				
상 호	(주)다일	등 록 번 호	충남 주택2007-0018		
대 표 자	윤 금 덕	법인등록번호	161511-0080590		
영업 소재지	충남 천안시 관동동 697번지 메트로프라자빌딩 403호				
대 지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0-1번지외 13필지	대 지 면 적	20,817㎡		
건 축 면 적	4,740.1771㎡	건 폐 율	22.77%		
연 면 적	59,320.2309㎡	용 적 율	217.31%		
동수(주/부)	6 / 7	세 대 수	381세대		
주 택 형 태	115A-34, 114B-26, 114C-34, 113D-28, 113E-36, 112F-33, 115G-34, 114H-27, 109I-33, 158J-36, 114K-28, 113L-32세대	총 사 업 비	77,406,748천원		
착공 예정일	2007.12.	사용경사예정일	2010.02.		
동 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 면 적(㎡)	동 고유번호	동명칭 및 번호	연 면 적(㎡)
1	101동	6,877.0187	10	기계/전기실	313.1396
2	102동	7,058.5505	11	지하주차#1	2,709.5333
3	103동	7,776.7806	12	110동	989.3524
4	104동	6,967.7846	13	111동(LPG저장소)	36.157
5	105동	9,289.2243			
6	106동	6,789.6567			
7	107동(무대시선)	485.34			
8	108동(경비실1)	13.8466			
9	109동(경비실2)	13.8466			
변 경 사 항					

2008년 9월 12일

공 주 시 장

"활짝 열린 시정, 함께 뛰는 시민"



공 주 시



수신자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유구 유황온천원보호지구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문화관광과-199(2006. 8.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하수도관련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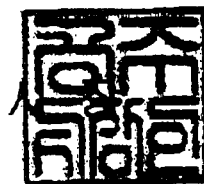
아 래

가. 협의 의견 내용

- 1) 오수처리후 방출지점 불분명에 대한 의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유구교) 까지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2) 유구하수처리장으로 처리시 하수처리계획에 포함가능여부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08년도 재정비되어 본 기본계획에 유구 유황온천 계획지구가 포함(환경부 승인)될 경우 유구 유황온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341톤/일)를 유구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할 수도 있으나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시행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끝.

공 주



★하수도담당 윤도영 지방토목주사보 박종일 지방토목서기 오재경 상하수도과장 전결 08/29
오형근

협조지

시행 상하수도과-8456 (2006.08.29.) 접수 ()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번지)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537 /전송 (041)840-2162 / e-mail:yoondy61@hanmail.net / 공개

유구 유황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 신청 보완 계획서(제3차)

구 분	협 의 의 건	보 완 계 획
충청남도 건설 정책과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경계표시	이 도면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여부(온천개발계획의 면적 및 위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하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시에 제출하겠음
	2. 첨부된 개발계획서상 개발계획면적이 200,00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 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검토서(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불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보고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의 시기에 제출하겠음
	3. 온천원보호지구가 하수처리기본계획 포함 가능여부가 불분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상기 1호의 500m 이내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경우 음식전, 휴게음식전 등의 설치 제한)	공주유구유황온천 지역이 국내 유일의 특수 유황온천으로서 개발시 우리시 지역경제에 지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공주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당해 온천개발 예정지역을 포함시킬 계획임
공 주 시 종합의견	공주유구유황온천 보호지구 신청지역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보기드문 특수 유황온천이며, 새로이 건설중인 상주-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유구IC에서 2~3분 거리에 위치함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주변도시의 접근성을 살려 효과적인 레저휴양지로서 개발한다면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남도는 물론 국제적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개선되는 개발환경여건을 토대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도시계획기본조례」 등의 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임	

유구유황온천 보완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도면 보완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경계표시
2.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 첨부된 개발계획서상 개발계획 면적이 200,000㎡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검토서(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불가)
3. 하수처리 기본계획 : 온천원보호지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 포함가능 여부가 불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기1호의 500m 이내 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경우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제한)

"활짝 열린 시정, 함께 뛰는 시민"



공 주 시



수신자 상하수도과장

(경유)

제목 유구 유황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협의

1. 충남도 '건설정책과-10463(2006. 9. 8)호와 관련입니다.
2. 유구 유황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충남도의 관련법 협의 결과 불임과 같이 재보완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당해 사업자의 보완 계획서가 제출되어 협의하오니 유구 유황온천지구
가 2008년 시행 예정인 공주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
시기 바라오며 검토 의견을 충남도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1. 충남도 관련 공문 및 유구유황온천 보완사항 1부.
2. 유구 유황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 신청 보완 계획서(3차) 1부. 끝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주사모 장순미

관광개발담당

김계영

문화관광과장

10/18

이태욱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3010 (2006. 10. 18.) 접수

상하수도과-10417 (2006. 10. 18.)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540 /진송 (041)840-2191 / ooo@gongju.go.kr

/ 공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공주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관광축제팀 - 3639(200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공주시 웅진동 일원 『공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대하여 기존 관광호텔, 상업시설, 조경휴양지, 여관부지를 아트센터, 전시·공연장, 이벤트광장등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3. 2010년 공주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옥숙박촌을 조성하여 체험형 숙박관광지와 백제문화관광지를 연계 활용하고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지형도면(안) 1부.(별첨). 끝.

★지방시설주사보 신중섭

도시계획담당

이영행

도시건축과장

노평중

산업국장

전결 06/24
이동열

협조자 지방시설서기

권재천

대백제전담당

유필중

관광축제팀장

代김계영

시행 도시건축과-13996 (2008.06.24.) 접수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 <http://www.gongju.co.kr>

전화 (041)

/전송 (041)

/ ooo@gongju.go.kr

/ 공개

곰나루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공주시 웅진동 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 (도시건축과 041-840-2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 6.

공 주 시 장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1. 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단위:m²)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전체면적		550,860	40,327		△18	550,860	40,309	
○ 편익및관리시설	계	110,593	9,415	△24,744	△2,448	85,849	6,967	
도 로		47,939	—	△13,426	—	34,513	—	
주 차 장	소계	15,901	—	△4,184	—	11,717	—	
	1-1	4,440	—	—	—	4,440	—	
	1-2	2,400	—	—	—	2,400	—	
	1-3	7,642	—	△5,265	—	2,377	—	
	1-4	1,419	—	1,081	—	2,500	—	
관 리 사 무 소	2	1,177	59	—	—	1,177	59	
화 장 실	3	225	33	—	—	225	33	
일반음식점1	4	27,150	4,550	—	—	27,150	4,550	
일반음식점2	5	1,754	283	—	—	1,754	283	
일반음식점3	8	7,409	2,220	△7,409	△2,220	—	—	폐지
일반음식점4	소계	2,927	300	—	—	2,927	300	
	19-1	1,627	180	—	—	1,627	180	
	19-2	1,300	120	—	—	1,300	120	
일반음식점5	6	—	—	6,386	1,742	6,386	1,742	신설
상 업 시 설	소계	4,869	1,470	△4,869	△1,470	—	—	
	10-1	1,240	294	△1,240	△294	—	—	폐지
	10-2	937	294	△937	△294	—	—	폐지
	10-3	891	294	△891	△294	—	—	폐지
	10-4	996	294	△996	△294	—	—	폐지
	10-5	805	294	△805	△294	—	—	폐지
노 인 시 설	소계	1,242	500	△1,242	△500	—	—	
	30-1	330	100	△330	△100	—	—	폐지
	30-2	912	400	△912	△400	—	—	폐지
○ 운 동 시 설	계	27,690	914	—	—	27,690	914	
수 영 장	18	1,820	96	—	—	1,820	96	
활 터	20	21,570	368	—	—	21,570	368	
매 점	—	—	150	—	—	—	150	
양 궁 장	22	4,300	300	—	—	4,300	300	
○ 유 희 시 설	계	22,414	320	—	—	22,414	320	
놀 이 시 설	7	22,414	320	—	—	22,414	320	

(단위:m²)

시 설 명	표시 번호	변 경 전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 휴 양 시 설	계	142,749	22,952	△42,813	△8,860	99,936	14,092	
국민여가캠핑장 (한옥숙박촌) (도로, 주차장제외)	11	-	-	27,207	4,136	27,207	4,136	신설
콘도미니엄	12	65,250	9,295	-	-	65,250	9,295	
관 광 호 텔	13	10,378	2,040	△10,378	△2,040	-	-	폐지
여 관	소계	34,664	9,879	△31,239	△9,218	3,425	661	
	14-1	4,735	1,346	△4,735	△1,346	-	-	폐지
	14-2	784	260	△784	△260	-	-	폐지
	14-3	2,410	700	△2,410	△700	-	-	폐지
	14-4	5,814	2,080	△5,814	△2,080	-	-	폐지
	14-5	1,800	560	△1,800	△560	-	-	폐지
	14-6	8,096	1,580	△8,096	△1,580	-	-	폐지
	14-7	4,207	1,346	△4,207	△1,346	-	-	폐지
	14-8	1,568	673	△1,568	△673	-	-	폐지
	14-9	1,825	673	△1,825	△673	-	-	폐지
	14-10	3,425	661	-	-	3,425	661	
조 경 휴 게 장	24	3,000	78	△3,000	△78	-	-	폐지
피 크닉 장	15	19,660	-	△19,660	-	-	-	폐지
다 목 적 광 장	소계	4,054	-	-	-	4,054	-	
	16-1	2,680	-	-	-	2,680	-	
	16-2	1,374	-	-	-	1,374	-	
청소년수련관	29	5,743	1,660	△5,743	△1,660	-	-	폐지
○ 특 수 시 설	계	86,672	6,726	63,385	11,290	150,057	18,016	
2010대백제전부지 (아트센터 등) (도로, 주차장제외)	17	-	-	63,385	11,290	63,385	11,290	신설
어 울 마 당	9	8,074	1,109	-	-	8,074	1,109	
문 화 재	25	7,060	524	-	-	7,060	524	
박 물 관	26	69,514	5,093	-	-	69,514	5,093	
응 비 탑	31	2,024	-	-	-	2,024	-	
○ 녹 지		160,742	-	4,172	-	164,914	-	

2.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687	34,531	2	1,540	23,804	4	905	7,337	2	242	3,390
대로	—	—	—	—	—	—	—	—	—	—	—	—
중로	3	1,037	19,606	1	795	16,216	—	—	—	2	242	3,390
소로	5	1,650	14,925	1	745	7,588	4	905	7,337	—	—	—

나.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 능	사용형태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795	16,216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344-20도	430전	
신설	"	3	1	12	102	1,226	"	"	336-2도	340답	신설
기정	"	3	2	14	140	2,164	집산도로	"	411전	산15-2임	
폐지	"	3	3	14	307	4,496	"	"	510임	398-1전	폐지
기정	소로	2	5	8	164	1,349	국지도로	"	749도	732구	
변경	소로	2	5	8	140	1,086	"	"	732-4구	381-1임	
폐지	"	2	6	8	96	789	"	"	381-1임	382-1임	폐지
기정	"	2	7	8	312	2,518	"	"	산15-2임	1-7전	
기정	"	1	8	10	745	7,588	"	"	399-28전	399-28전	
기정	"	2	9	8	279	2,342	"	"	385-12전	산15-2임	
폐지	"	2	10	8	165	1,347	"	"	734도	332-6도	폐지
폐지	"	2	11	8	135	1,100	"	"	336-2도	332-19잡	폐지
폐지	"	3	12	6	71	443	"	"	352-1답	353전	폐지
폐지	"	3	13	6	203	1,244	"	"	732구	393-1전	폐지
폐지	"	3	14	4	64	309	"	"	732구	734도	폐지
폐지	"	3	15	6	89	572	"	"	353전	350답	폐지
폐지	"	3	16	6	106	696	"	"	350답	352-3답	폐지
폐지	"	3	17	6	129	804	"	"	732구	356전	폐지
폐지	"	3	18	6	116	740	"	"	345-3대	336-3답	폐지
폐지	"	3	19	4	115	494	"	"	337답	338답	폐지
폐지	"	3	20	4	315	1,337	"	"	332-3답	327-1답	폐지
기정	"	2	21	8	174	1,391	"	"	산15-4임	10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공 주 시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회신

1. 도시건축과-18621, 18631호(2008.8.12)와 관련입니다.

2. 웅진동 336-1, 325-1번지 일원 『2010 대백제전부지 조성사업』 『국민여가 캠핑장(가족호텔)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법을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불 임 : 관련법 검토결과 의견서 1부 끝.

상 하 수 도 과 장

★지방사무원(기능8급) 이동희

하수도담당

윤도영

상하수도과장

08/29
노재현

협조자 지방시설서기

김대영

시행 상하수도과-10283 (2008.08.29.) 접수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342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537 /전송 840-2162

/ 0000@gongju.go.kr

/ 공개

【도시건축과 - 18621, 18631(2008. 08. 12)호 관련】

위 치 : 웅진동336-1, 325-1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담당부서	관련법	심 의 의 견	검토자
상하수도과	하수도법	【오수관로】 ① 백제큰길 연결도로 기존마을 오수처리계획 검토요 ⇒ 102호 오수관로와 연결 필요 ② 기존마을(국립공주박물관앞부터 웅진1통 회관방향)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M1-14호 부터 M1-6 방향으로 오수관로 및 기존마을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맨홀 신설 검토 ③ 국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처리계획 검토 ④ 백제큰길 연결도로 및 국립공주박물관 진입도로와 기존 마을안길 오수관로 표기 및 기존 오수관로 단지내 오수관로와 연결 검토 ⑤ 오수맨홀뚜껑은 수밀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내부 점검 및 준설 작업을 위한 사다리 설치 검토 ⑥ 성토지역으로 관부설 후 침하로 인한 경사도 변형 예방을 위하여 관로 매설구간 설계 반영 ⑦ CCTV 및 수밀시험시 하수도담당직원 입회 검사 ⑧ 준공시 오수관로 준공도면 인계 ⑨ 각 동 건물 오수받이 설치 및 오수관로 교차 연결지점 및 선형 변경 지점 수밀 물받이 설치 검토 【우수관로】 ① 기존 마을에서 배출되는 우수가 계획우수관로로 유입되도록 상세히 도면 표기 재검토 ② 국공장에서 배출되는 우수처리계획 재검토 ③ 기존 백제큰길 연결도로 및 국립공주박물관 진입도로 계획우수관로에 상세표기 및 연계 처리계획 재검토 ④ 웅진1통 마을회관 방향에서 배출되는 우수관(Ø1200mm)지역에서 하류지역 기존 수문 배수로와 연결 되도록 검토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대백제전) - 계획오수량 : 1,053.18m³/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액 : 1,579천원/m³ - 산출금액 : 1,053.18m³/일*1,579천원/m³ =1,662,971천원 (숙 박 촌) - 계획오수량 : 1,252.09m³/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액 : 1,579천원/m³ - 산출금액 : 1,252.09m³/일*1,579천원/m³ =1,977,050천원	기능8 이동희
	상수도법	○ 상수도보급지역으로 급수공사비 납부시 수도공급이 가능하며, ○ 급수신청은 수도공급 개시 2개월전 별도서식에 의거 신청하시고, 현장조사후 급수공사비(공사비+ 시설분담금)납부하시면 급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시설8 김대영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요청

우리시 웅진동 32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국민여가캠핑장(가족호텔)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저촉여부를 협의(의제협의 포함)하오니 처리결과를 붙임 의견서에 의하여 2008. 8.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제협의) 의견서 1부(관련서류 별송). 끝

정화민지4가방: 031-420-7365
창우생제수무2: 011-401-7701

도 시 건 축 과 평 중

수신자 정보통신실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문화재관리소장

지방시설주사보 신중섭 도시계획담당 대신중섭 도시건축과장 08/12
代하희성

협조자 지방시설주사 박지규

시행 도시건축과-18631 (2008.08.12.) 접수 상하수도과-9624 (2008.08.18.)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 <http://www.gongju.co.kr>

전화 (041)

/전송 (041)

/ ooo@gongju.go.kr

/ 공개

검 토(의제 협의) 의 건 서

건 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국민여가 캠핑장(가족호텔) 조성사업	
사업 시행자	○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 성 명 : 공주시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25-1번지 일원	
사업면적 또는 규모	○ 휴양시설 : 27,207㎡ - 건축면적 : 5,167.52㎡(연면적:4,295.3㎡) ○ 도로 : 1,226㎡ ○ 주차장 : 2,449㎡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 : 6,386㎡	
구 분	검 토(의제 협의) 의 건	관련부서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시민봉사과
전기통신 기본법 등		공보전산실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등		환경보호과
수도법 제12조 등 하수도법 제13조 등		상하수도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구거)		건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관리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관리소
건축법 제8조		도시건축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요청

우리시 웅진동 33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부지내 「2010 대백제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저촉여부를 협의(의제협의 포함)하오니 처리결과를 불임 의견서에 의하여 2008. 8.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검토(의제협의) 의견서 1부(관련서류 별송). 끝

도 시 건 

수신자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문화재관리소장

지방시설주사보 신중섭 도시계획담당 대신중섭 도시건축과장 08/12
代허희성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18621 (2008.08.12.) 접수 상하수도과-9625 (2008.08.18.)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 <http://www.gongju.co.kr>

전화 (041)

/전송 (041)

/ ooo@gongju.go.kr

/ 공개

검 토(의제 협의) 의 건 서

건 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 칭 : 2010 대백제전부지 조성사업	
사업 시행자	○ 주 소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 성 명 : 공주시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336-1번지 일원	
사업면적 또는 규모	○ 2010 대백제전부지 조성사업(70,644m ²) - 전시장 : 63,385m ² - 도로 : 2,143m ² - 주차장 : 2,377m ² - 녹지 : 2,739m ²	
구 분	검 토(의제 협의) 의 건	관련부서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시민봉사과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등		환경보호과
수도법 제12조 등 하수도법 제13조 등		상하수도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구거)		건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관리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관리소

공주 금나루유원지 세부조성계획(변경)보고서

2006. 3



공 주 시



3) 유치기능 및 시설

기능구분	유치시설	비고
조경휴게기능	관광농원, 피크닉장,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등	곰나루국민관광지
대중위락기능	수영장, 온천센터, 콘도, 여관, 어울마당, 수영장 등	대중위락지구
백제문화보존기능	박물관, 활터, 민속주점, 마을	백제문화지구
녹지	산책로 등	개발유보

3. 기본구상

1) 관광객수요예측

① 기존관광객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301,429	3,413,905	3,462,236	3,486,609	3,629,114	3,668,095
증가율(%)	-	3.41	1.42	0.7	4.09	1.07

자료: 공주시통계연보, 2005

② 관광객 전망

■ 인구 구조의 변화

-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학력층, 전문직종사자의 증가
-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
- 도시인구, 정년퇴직자의 증가

■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 일(노동)중심에서 여가(휴식)의 필요성 인지
- 미래지향적 가치관에서 현실중심형 가치관으로 변모
-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소비지향적 문화의 만연
- 도시의 복잡한 일상생활(교통혼잡, 스트레스 등)로 부터의 탈피욕구 증대

■ 여가시간 및 여가행태 변화

-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였다

<계획주차대수>

구 분	주차장면적(m ²)	주차대수	비 고
공공주차장	10,477	575	
콘도미니엄	11,139	672	
관광호텔	2,087	83	
여 관	770	30	
어울마당	373	15	기존 메밀문화관광단지
박 물 관	4,500	78	
상업시설	1,117	45	
양 궁 장	258	10	
일반음식점1	9,086	363	
일반음식점4	539	21	
일반음식점3	820	33	
웅 비 탑	120	3	
계	41,286	1,928	

3) 기 본 구 상

① 기존관광객현황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중 공주문화관광단지의 상호보완적 기능 도입
- 백제큰길의 확장에 따라 본 유원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수립
- 자연지형과 주변 경관 특히 인근의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계획의 수립
-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백제열을 배울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 온천발견에 따라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시설 설치
- 통과 관광지에서 체류형관광지로 전환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
- 다양한 기회제공을 위한 시설 구상
- 중복되는 시설의 설치배제

충청남도 고시 제2007- 호

공주문화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

1. 공주시 웅진동·봉정동 일원의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문화관광과(041-840-25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7. 10. 1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공주문화관광지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봉정동 일원

다. 면 적 : 799,056㎡

라. 시 행 자 : 공주시장

마. 사업기간 : 1996 ~ 2011(16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개재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변항

아.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조성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5) 민간개발자에게 조성사업 허가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할 것

붙임 : 공주문화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충청남도지사

지방시설주사

관광개발담당

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국장

첨 주 자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주사

시행 관광진흥과-5199 (2007.09.27.) 접수 문화관광과-12418 (2007.09.27.)

우 301-763 대전 중구 선화동 287번지(중암로 155)충청남도도청 / <http://chungnam.net>

전화 042-220-3334 / 전송 042-220-3336 / limhk@chungnam.net / 공개

" 700년 대백제의 꿈, 충남의 미래입니다."



충청남도



수신자 공주시장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공주문화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1. 공주시 문화관광과-5339(2006.05.22)호,
문화관광과-12189(2007.09.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의 공주문화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동의 및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지 지정(변경)

- 당초 : 1,330,000㎡
- 변경 : 799,056㎡

나. 관광지 조성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관광시설 (동)	층수	비고
계	799,056	24,031	113,728	66		
공공시설용지	114,857	2,298	4,669	12	1~2	
숙박시설용지	93,088	10,872	85,134	11	1~9	관광호텔
상가시설용지	54,434	7,091	7,091	37	1	
운동오락시설용지	61,725	2,340	15,180	2	2~5	
휴양문화시설용지	209,008	1,430	1,654	4	1~2	상징탑
기타시설용지(녹지)	265,944	-	-			

다. 준수사항

1) 본 조성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세부집행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2) 충청남도 고시 제1996-160호 관광지 지정 승인 시 부여된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하여야 함.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시 관계기관 인허가 및 협의사항, 귀시 관련부서 및 우리 도 관계부서 등의 협의의견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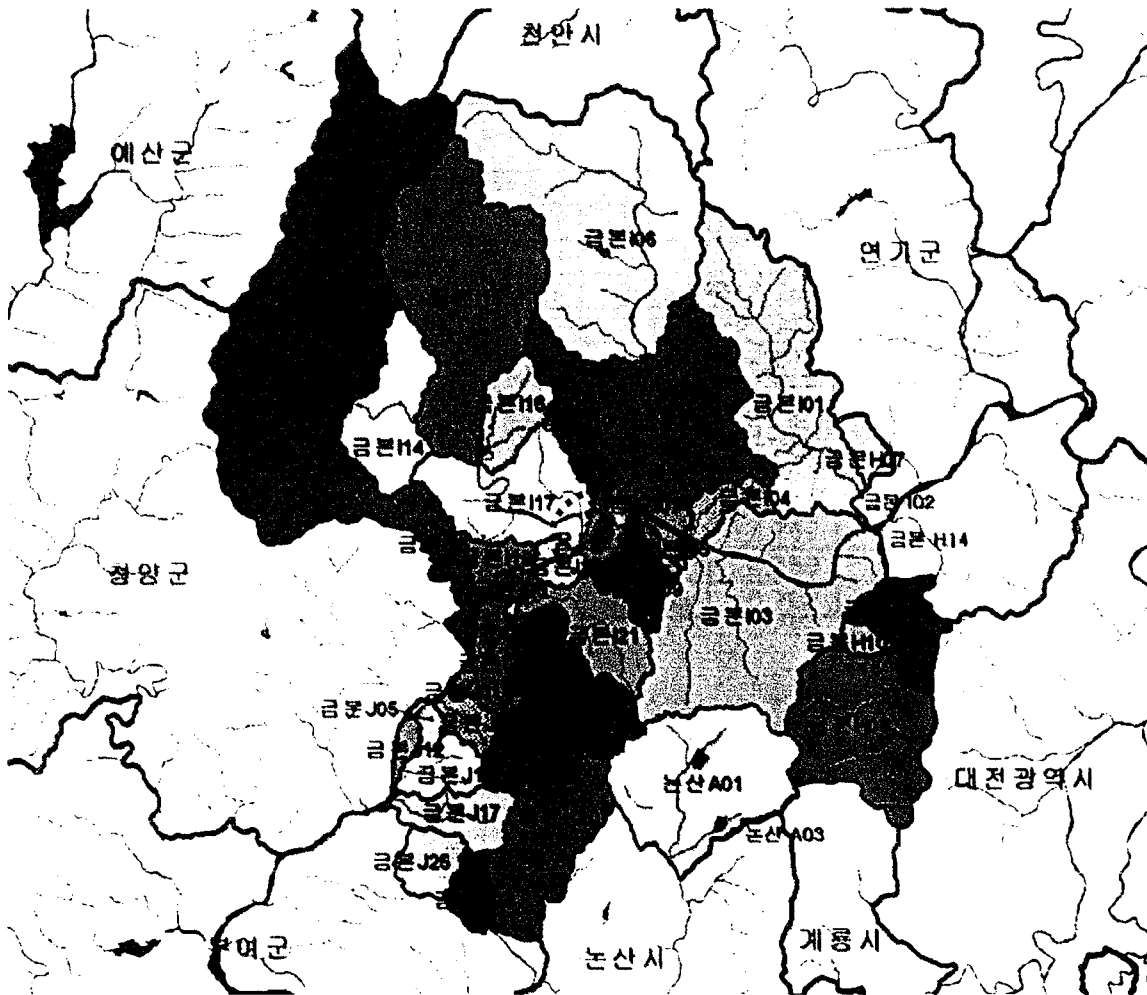
4)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주문화관광지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 공주문화관광지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①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공주문화관광지조성계획의 대상지가 위치한 공주시 웅진동 및 봉정동은 충청남도 총량관리단 위유역인 '금본I 유역'에 해당됨



② 공주문화관광지 오염부하량 산정

1. 생활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가. 사업시행전

1) 오수발생량

- 사업지구내 상주인구 55인에 의한 가정오수가 발생
- 적용 원단위는 비시가화 지역을 적용함

가정인구오수발생유량 =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가정인구잡배수발생유량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수×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원단위

가정인구잡배수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가정인구사용유량-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자료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연구원, 2004

생활계 분뇨발생유량원단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구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인/일)	잡배수오수전환율
시가화	0.00115	0.88
비시가화	0.00134	0.88

자료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연구원, 2004

가정인구 오수량 산정결과

(단위 : ㎡/일)

인구수(인)	사용유량	총오수발생량	잡배수발생량	분뇨발생량	비고
55	13.750	12.109	12.035	0.074	

자료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연구원, 2004

2) 발생부하량

- 적용 원단위는 비시가화 지역을 적용함

가정인구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가정인구발생부하원단위

가정인구분뇨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비×가정인구발생부하량

가정인구잡배수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가정인구발생부하량

자료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국립환경연구원, 2004

나. 사업시행후

1)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text{오수량} = \text{급수량} \times \text{오수화율} + \text{지하수유입량} (\text{오수량의 } 10\%)$$

영업인구 오수량 산정결과

구분	계획기준 일이용객(인)	급수원단위 (ℓ/인)	급수량 (m³/일)	오수화율 (%)	오수량 (m³/일)
계	19,643	-	2,161	-	1,903.242
숙박객	5,893	250	1,473	80.075	1,297.675
일귀객	13,750	50	688	80.075	605.567

2)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원단위는 숙박객의 경우 「수계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중 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한옥촌)의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 일귀객은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상점의 원단위를 적용하였음

$$\text{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text{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times \text{영업인구 오수발생농도}$$

발생부하량 산정결과

구분	오수량(m³/일)	BOD원단위(g/m³)	BOD발생부하량(kg/day)
숙박객	1,297.675	140	181.675
일귀객	605.567	250	151.392
계	1,903.242	-	333.067

다. 배출부하량

- 배출농도는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후 계획수질 10mg/ℓ를 적용하였음
- 공주문화관광지는 대상지 남측에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역에 해당되며,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 업무 처리지침, 2006, 환경부」 중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였음
- 관거배출량은 관거이송 과정에 누수, 월류 및 배제를 통해 배출되는 양으로서, 관거배출비는 총관거배출량을 각 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총관거유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 배출원별 관거배출량은 개별적인 파악이 어려우므로 배출원의 관거유입량에 상기에서 산정된 관거배출비를 곱하여 산정

원인자 부담금 협의문서

1. 주택건설사업(신관동 산 32-37)
2. 국민임대주택건설(신관(6)지구)
3. 금학e-편한세상 공동주택사업
4. 월송택지개발
5. 신금택지개발
6. 유구공동주택
7. 유구온천지구



공 주 시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견서 제출

신관동 일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검토의견

1. 도시건축과-481(2006.01.11)호와 관련입니다.
2. 신관동 일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부서별	관 련 법	심 의 의 건	검토의견	검토자
상 하 수도과	수 도 법	급수구역내로 상수도공급은 가능하나 수도계획이 장래 개설예정지인 도시계획도로에서 인입계획으로 되어 있어, 추후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저수조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도법 제11조의 2에 의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절수설비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토목 7 노동근
"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지역으로 우·오수를 분리연결하시고, 준공전 <u>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u> 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 7 김창섭
"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7·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개발하고, 준공검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능10 이정미

"마침"

상 하 수 도 계획장

★지방행정주사보 양승렬 수도행정담당 김용진 상하수도과장 01/13
원정희

협조자

시행 상하수도과-375 (2006.01.13.) 접수 도시건축과-668 (2006.01.16.)

우 345-70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go.kr

전화 (041)840-2522 /전송 041)840-2162 / feelya@netian.com / 공개

"활짝 열린 시정, 함께 뛰는 시민"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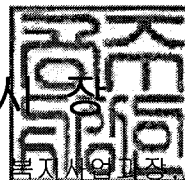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실무심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5-8번지 동원빌딩4층 (주) 대윤PND 김기두로부터 신관동 산32-1번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공주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코져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서류임을 감안 심의·검토 의견을 2006.01.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 임 : 1. 관련 실·과 협의내용 각 1부.
2.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협의서 각1부.
3. 민원실무종합심의결과(통보)서 각 1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협의서류 각1부.(별송) “끝” .

공 주 시



수신자 시민봉사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사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지방건축주사보 조병철 주택담당 신유섭 도시건축과장 01/11 전경일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481 (2006.01.11.) 접수 상하수도과-309 (2006.01.11.)

우 345-70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472 /전송 041)840-2167 / jbc5288@hanmail.net / 공개

"활짝 핀 시민 시정, 함께 뛰는 시민"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실무협의 요청

대한주택공사 대표 김진으로부터 우리시 신관동 산 32-21번지의 66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접수되어 충청남도로부터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민원실무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실무심의 협의하고자 하며, 심의의견은 2004. 7. 8까지 기일영수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1. 실과별 협의내용 1부

2. 협의서류 1부(별송). 끝.

공 주 시 장

관인생략

수신자 시민봉사과장(환경건축담당, 농지산림담당),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지방건축주사 김점식

주택담당

신유섭

도시건축과장

전경 06/24
전경일

협주자

시행 도시건축과-5710

(2004.06.24.) 접수

우 314-702 충청남도 공주시

전화 041)

/전송 041)

/ http://www.gongju.go.kr/

/ 공개

"맑 짝 얄린 시짱, 합께 뛰는 시민"



상 하 수 도 과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 목 검토(주택건설)의견서 제출

1. 도시건축과-5710(2004.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신관동 주택건설사업승인{대한주택공사 대표 김진}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검 토 자	비 고
상수도 관련	급수구역내로 시설분담금 103,400천원(급수공사비 별도)이므로, 급수개시 2개월 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여야 함.	토목7, 이영철	
배수배출시설관련	우·오수처리계획에 의거 시공하시고 준공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행정7, 김창섭	
지하수법 관련	지하수개발 시 지하수법7, 8조에 의거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개발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행정6, 양재웅	

"마침"

상 하 수 도 과 행정직

지방행정주사 양승렬

수도행정담당 김용진

상하수도과장 07/15
원정회

협조자

시행 상하수도과-5081

(2004.07.15.) 접수 도시건축과-6522

(2004.07.16.)

우 345-701 충남 공주시 공학동 319

/ http://www.ssp8848@kornet.net /

전화 (041)840-2522 /전송 041)840-2162

/ disrb325@hanmail.net

/ 공개



공 주 시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견서 제출

이런하야

1. 도시건축과-6292(2006.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부서별	관 련 법	심 의 의 건	검 토 자
상 하 수도과	수 도 법	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급수개시 2개월 전에 급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목 7, 박종일
"	하수도법	배수설비 공사시 반드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준중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 6, 이정복
"	지하수법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7·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개발하고, 준공검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토목 9, 김대영

“마침”

상 하 수 도 재 정 의 회

★지방행정주사보 양승렬

수도행정담당

김용진

상하수도과장

04/25
원정희

협조자

시행 상하수도과-4025 (2006.04.25.) 접수

도시건축과-6688 (2006.04.25.)

우 345-70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go.kr>

전화 (041)840-2522 /전송 041)840-2162

/ feelya@netian.com

/ 공개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실무심의

1. 시민봉사과-1727,-1742(2006.01.26.),-1819(06.01.27.)-2045(06.02.01.),
-21580(05.10.11.), 회계과-810(06.01.26.), 지역경제과-17605(05.09.29.), 문화관광과
-10112(05.10.12.), 복지사업과-1375(06.01.23.),-13560(05.10.12.), 건설과-1069
(06.01.26.), 상하수도과-8051(05.09.29.), 도로교통과-20907(05.10.07.), 환경보호과
-1667(06.01.24.), 지적과-988(06.01.23.), 산림과-6486(05.09.30.) 및 도시건축과-2801
(06.0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심의 결과통보 및 사업계획승
인 통보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주시 금성동 178-7번지 수석산업개발(주) 대표 오종철로부
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요청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 2006. 05. 04.까지 협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내역 각 1부.
2.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협의서 각1부.
3. 민원실무종합심의결과(통보)서 각 1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협의서류 각1부(별송). “끝” .

공 주 시 장

관인생략

수신자 시민봉사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사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지방건축주사보 조병철 주택담당 신유섭 도시건축과장 04/18
代홍기석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6292 (2006.04.18.) 접수 상하수도과-3785 (2006.04.18.)

우 345-70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472 /전송 041)840-2167 / jbc5288@hanmail.net / 공개



공 주 시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1. 도시건축과-24608(2007.11.23)호 및 상하수도과-14124(2007.12.7)호와 관련
입니다.

2. 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을 검토하
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하수도법 : 배수설비설치신고는 착공 전에 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처리계획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별도 협의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상 하 수 도과장 윤도영

지방사무원(기능 10급) 이정미

하수도담당

윤도영

상하수도과장

12/07
오형근

협조자

시행 상하수도과-14168 (2007.12.10.) 접수 도시건축과-25978 (2007.12.10.)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342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537 /전송 (041)840-2162 / ooo@gongju.go.kr

/ 공개

"세계 최고 토지 서비스 기업"



한 국 토 지 공 사

수신자 : 공주시장

(경유)

참 조 : 상하수도과장

제 목 : 공주신금 하수(오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송부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상하수도과-194('07.01.08)호 및 대전충남지역본부-4494('07.04.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하수도법 제32조 및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직인 날인하여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협약서 2부. 끝.

담당자	담 당	과
이정애	홍순모	이항섭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결재

대리 양동영

과장 구남실

팀장 홍순모

단장 박종선

본부장 김광수

협조자 대전충남지역본부 차장 이항섭

(2007. 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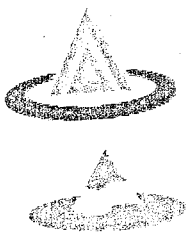
시행 대전충남지역본부-6717 (2007.06.04.) 접수 상하수도과-6430

우 302-816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19 / <http://www.iklc.co.kr/>

전화 041-854-9836 전송 041-854-9837 / dyyang@iklc.co.kr / 공개

2007.06.7

-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공 주 시
한 국 토 지 공 사

-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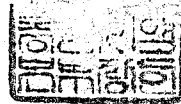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공주시장(이하 "甲(갑)"이라 한다)과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및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신금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시기 및 협약 당사자의 책무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공주신금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금일십억사천팔백사십오만육천원정(₩1,048,456,000)(산출내역 별첨)으로 하되 본 협약 제 3조의 협약사항에 따르며,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은 본 협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정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은 공주시에서 공고한 200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협약 체결한 후 공주신금지구택지개발사업의 준공년도에 공주시에서 공고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한다. 또한, 추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甲"과 "乙"이 상호 협의 후 재 협약하기로 한다.

제4조(납부시기 및 금액)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이 2회로 분할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甲"의 고지서에 의한다.

○ 1차 납부

- 금액 : 금칠억원정(₩700,000,000)
- 납부기한 : 2007년 6월 30일

○ 2차 납부

- 금액 : 금삼억사천팔백사십오만육천원정(₩348,456,000)
- 납부기한 : 2007년 12월 30일

○ 정산

- 공주신금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년도(2008. 9월 예정)

제5조 (협약 당사자의 책무)

"甲"은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 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05.11.30) 내용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공주시 공공하수도시설에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乙"은 이 협약서 제2조에 따라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의 효력)

본 협약은 "乙"이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금)규정에 따라 공주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하여 하수처리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甲"에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7조 (협약서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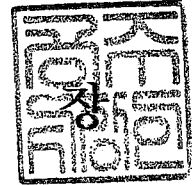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와 협약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입주민의 공공하수도 이용편익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효력의 발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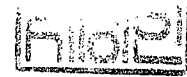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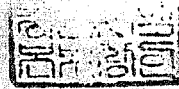
본 협약은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06. 7.

甲 : 공 주 시



乙 :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원인자 부담금 산출서

- 계획 일 최대 오수량 : 664m³/일
- 2007년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액 : 1,579천 원/m³
- 산출금액 : 664m³/일 * 1,579천 원/m³ = 1,048,456천 원



공 주 시



수신자 도시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 검토의견서 제출

1. 도시건축과-17861(2007.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유구 석남 270-1번지 일원)에 따른 검토의견을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검토의견서 1부. “마침”

상 하 수 도과장 김

★지방행정주사보 양승렬

수도행정담당

김계영

상하수도과장

10/05
오형근

협조자 하수도담당

윤도영

상수도담당

김대환

시행 상하수도과-11360 (2007.10.05.) 접수

우 "345-7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go.kr>

전화 (041)840-2522 /전송 041)840-2162

/ feelya9906@hanmail.com

/ 공개

민원실무종합 심의결과

유거 동동파악 (다인)

부서별	관련법	협 의 내 용	검 의 토 건	검 토 자
상 하 수도과	수도법	1. 수도공급 가능지역으로 급수신청은 급수개시 2개월 전에 별도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신설공사비는 시설분담금에 공사비를 합산하여 고지서로 통보합니다. - 시설분담금예상액 : 49,530천원 = 130,000원×381세대 - 공사비 : 급수신청 후 설계실시 2. 수도법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수도꼭지 등에는 절수설비(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3. 수도법 제13조(시설기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시설기준)에 의거 건물내부의 수도배관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의 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저수조는 수도법 제13조(시설기준 등)제3항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조(저수조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합	토목 8 김대영
	하수도법	○ 하수도법 27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의거 오·우수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오수관에 대하여는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오수맨홀 설치 시 인버터를 설치하여 유입·유출부 단차 발생 않도록 하고 수밀 맨홀뚜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중·후 사진 및 CCTV 촬영한 CD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추후 협의하여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적합	기능10 이정미
	지하수법	○ 택지조성 시 기 설치허가·신고 및 미신고 사용 지하수가 있을 시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지하수법시행령 13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내지 변경신고 후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합니다. ○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법 제7·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개발하고 준공검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적합	토목 8 남기덕

“ 힘찬도전! 위대한 공주 ”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심의

1. 충남 천안시 불당동 697번지 메트로프라자빌딩 403호 (주)다일 대표 윤금덕
으로부터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0-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관련법 심의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민원서류임을 감안 관련법 인·허가 의제협의 및 심의결과를 불임서식
(통보서)에 의거 2006년 09월 18일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실·과 협의내용 각1 부.

2.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협의서 각1부.

3. 민원실무종합심의결과(통보)서 각 1부.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협의서류 각 1부(별송). 끝.

공 주 생 활 중

수신자 공보전산실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지방건축주사보 고정우 주택담당 이장호 도시건축과장 전결 08/30
노평중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17861 (2007.08.30.) 접수 상하수도과-10012 (2007.08.30.)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472 /전송 041)840-2167 / E-mail:gojw7@hanmail.net / 공개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



공 주 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구 유황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승인사항 통보

1. 충청남도 건설정책과-13231(2006. 11. 23)호와 관련입니다.
2. 온천법 제3조에 의한 유구 유황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승인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정승인 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승인조건 1부. 끝.

공 주 시 장

관인생략

수신자 시민봉사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지방행정주사보 장순미 관광개발담당 대김진택 문화관광과장 11/27
이태묵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4678 (2006.11.27.) 접수 상하수도과-11874 (2006.11.27.)

우 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540 /전송 (041)840-2191 / ooo@gongju.go.kr / 공개

「유구유황온천원보호구역」 지정승인 조건

1. 온천관련

- 온천수의 공급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일일 적정 양수량($3,180m^3$ /일)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함.
- 온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실과협의시 제시된 보완 사항을 모두 반영 관계부서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온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내용 및 관계 서류는 공주시에 비치하여 3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동 개발예정지역의 온천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변경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온천이용시설 등의 공간배치는 관광객의 이용형태, 입지조건 등 지역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광형태를 고려한 개발수요와 부지 잠재력에 의한 개발 가능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호관련

- 온천원보호구역내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식생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보존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주변환경 피해예방은 물론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수질관리분야

-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명곡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상 지역임.(사업지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임.)
- 온천원보호구역 지정 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으로 결정시 유구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해결하여야 함.

4. 건축분야

- 건축물 건축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도로교통분야

- 국도와의 연결 및 지구내 통과하는 농어촌도로는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10만 m^2 이상으로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6. 기 타

-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타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할 시 조치사항을 선행한 후 제출)

붙 임 :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 關聯部署 協議意見 및 措置計劃

실과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문 화 예 술 과	○ 보호지구내에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 구역은 없음. ○ 문화재보호법 의한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개발계획 전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 및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협의되는 문화재 보존대책 이행	○ 해당사항 없음. ○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 및 동법 제7조의2제2항에 의거개발계획전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결과를 도 및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협의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하겠음.
관 광 진 흥 과	○ 지정관광지 개발계획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신규관광지 조성계획이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기 반 조 성 과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 이행 ○ 편입되는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개발계획 단계에서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절차 이행.	○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전 농지전용허가 협의 절차를 이행조치 하겠음. ○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신청서에 예시된 온천개발계획구역은 확정된 구역이 아니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산 림 과	○ 편입된 공유림에 대하여는 해당관리부서와 별도의 협의절차 이행 - 온천구역으로 편입되는 보전산지(임업진흥권역)중 원형보전지, 녹지지역 등으로 계획된 부분은 구역에서 제척(예정지로 계획된 최소한의 면적만 구역 지정) ○ 예정지로 편입이 불가피한 임업진흥권역은 지구지정 승인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 ○ 기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도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형질우량 천연림, 급경사지, 암석지 등 지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형보전하되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등 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전산지 편입비율 50% 저축과 국도변 가시지역으로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임업진흥권역이 편입산지 면적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명곡리 초입부 등 25도 이상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계획된 온천개발시설지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 및 제7조의2 제1항. 제2항의 온천개발면적 산정기준등에 의거 온천개발 대상토지로 편입시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함 . ○ 온천법 제3조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신청서에 예시된 온천개발계획 구역은 확정된 구역이 아니며,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을 득한 후 온천법 제7조의2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임업진흥권역이 편입될 경우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보전산지의 용도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 수립시에 시행하겠음. ○ 온천개발면적에 보전산지, 급경사지 등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음.

실과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경 제 정책과	-보호지구 지역내 3개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							○ 광업권설정지역은 온천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온천원이 부존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으로 광업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코자 함.
	등록번호	소재지역	광종	면적(ha)	등록일자	광업권자		
						성명	주 소	
	71300	유구	활석	69	2000 10.21	경기실업(주)	인천 동 송현 2	
	74362	유구	금,은	276	2004 12.08	이준용	서울강북수유472-11 은진스톤하우스 403	
	75044	유구	금,은 규석	276	2005 11.03	이수자	경기수원영통메탄 231-47 우석골든빌리지 103	
환 경 관리과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지구의 지정전 금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검토 협의절차 이행 ○ 동 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면적 30만㎡이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금강유역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이행							○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시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이행 ○ 온천개발예정면적은 20만㎡ (30만㎡이내)으로 해당사항 없음.
수 질 관리과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상지역임. ※ 단위유역 :금본1, 목표수질BOD 2.9mg/ℓ, 할당부하량 7,867.8kg/일 ○ 동 지역은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생하는 오염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예측)하고, 해당소유역의 개발계획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경우 할당부하량의 초과 및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2010년까지의 연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개발예정지역의 기존 폐공 및 온천공 개발도중 발생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08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향후 오염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의 산정(예측), 할당부하량의 삭감 계획 등은 온천개발계획수립시(사전환경성검토시)에 이행하고자함. ○ 온천개발 예정지역의 기존 폐공과 온천공 개발도중에 발생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여 오염물질이 폐공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주 택 도시과	○ 휴양콘도 및 여관, 가족호텔 등의 부지 일부는 향후 부지 조성시 경사면에 대하여 대지 안정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구릉지 하단부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양콘도지구 경계는 가급적 등고선을 따라 현지 지형에 어울리게 지정. - 휴양콘도 및 가족호텔과 여관구역 사이는 산책로 연결통로 연계방안 검토.							○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1) 휴양콘도 및 여관, 가족호텔 등의 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부지를 구릉지 하단부까지 확장 적극검토 조치, 2) 휴양콘도지구 경계를 현지 지형에 어울리도록 설계검토, 3) 산책로 연결통로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실과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도 로 교통과	○ 기존 국도와의 연결 및 지구내를 통과하는 농어촌도로는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온천개발 승인전까지 교통영향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기존 국도와의 연결 및 지구내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 교통영향심위원회의 심의는 온천법 제7조의 온천개발계획수립의 단계에서 득하겠음.
치 수 방재과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명곡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금년 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재협의하여야 하고, 국·공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수도법 제8조에 의한 상수도 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온천개발계획수립시 확정되는 온천개발계획도에 명곡천의 일부가 개발면적에 편입될 경우 도와 재협의 하겠으며, 국·공유지가 편입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음. ○ 상수도계획과 재해위험지구 관련사항은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사전협의하여 이행 조치하겠음.
건 설 정책과	○ 상수원보호구역을 승인신청도면에 표시. ○ 귀시 상수도시설사업소의 의견 제시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 오수처리후 방출지점 불분명(배수관 매설 및 위치표시)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의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경계표시 ○ 첨부된 개발계획서상 개발계획면적이 200,00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 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검토서(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불가)	○ 유구지방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도면 표시 (별지2의 <그림 1>참조). ○ 2008년도 공주시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시 온천개발계획 예정지 포함시킬 계획임. ○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시행시 협의 조치함. ○ 오수처리 후 방출지점은 유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관로 매설위치는 <그림 1>에 표시함.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후 온천개발계획수립시 검토 제출토록 하겠음 (행자부 질의공문 사본)

기타 공문

1. 운암소규모하수도 인수·인계 사항 관련
2. 신대정간이오수처리시설 폐쇄 관련
3. 공암처리구역 도시관리계획도

“ 제54회 백제문화제 10. 3. ~ 10. 12. ”



공 주 시



수신자 상하수도과장
(경유)

제 목 마곡사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인수.인계 협의 회신

1. 상하수도과-11187(2008.09.18)호와 관련입니다.
2. 마곡사 관광지 오수처리장은 1996년 마곡사 관광지 공영개발을 하면서 단지 내 오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2011년 이후 공공하수도로 이관할 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에 2010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오수처리 시설로 관리하고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추진과 연계하여 공공하수도로 이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 광 축 제 팀장

★지방시설서기 오재경 관광지도심단장 강석광 관광축제단장 이태록 09/19

인조자 지방사무원(기년7급) 변영옥

시행 관광축제팀-6842 (2008.09.19.) 접수 ()

우 314-702 충남 공주시 교동 120

/ <http://www.gongju.go.kr/>

전화 (041)840-2838 / 전속 041)840-2848 / ooo@gongju.go.kr / 공개



금강유역환경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이행계획 확정통보

1. 환경부 생활하수과-3476('07.11.20),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520('08.2.19)호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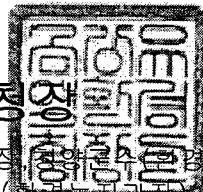
2. 위 호 관련하여 귀 시·군에서 제출한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한 우리청 검토결과를 불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정비를 철저히
한 후 하수도법('07.9.28)에 의한 설치 인가(협의) 및 사용개시 공고 등의 행정절차 이행
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행계획에 따라 시설정비가 완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즉
시 이행하여 주시고, 사용개시 공고일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08.12.26)」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보고서(서식불임)를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08.3.31일 현재 시설정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설(부임2)은 '08년
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08.12.26)」의 추진상황 점검표(서식불임)에 의거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1부. :
2. '08년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시설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보고서 1부
 4.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표(작성서식)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



수신자

대전광역시(수질관리과장), 천안시(환경사업소장, 청원군수(환경보호과장), 보령시장(보령시맑은 물사업소장), 보령시장(환경보호과장), 계룡시장(환경보호과장), 부여군수(환경위생과장), 연기군 환경사업소장, 논산시(환경사업소장),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금산군수(환경사업소장), 서천군 수(맑은물사업소장), 청주시(환경사업소장), 청원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청원군수(환경과장) 보은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수(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영동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군수(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여군수(도시과장), 예산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산시상하수 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공주시(상하수도과장), 홍성군수(수도과장), 서산시(수도과장), 증평 군수(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장), 태안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산시(환경보호과 장), 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 진천군수(종합민원과장), 충청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 보령시 장(건설과장), 보령시장(도시주택과장), 보령시장(관광과장), 연기군수(환경보호과장), 부여군수 (건설과장), 부여군수(종합민원실장)

환경서기보

차용주

계장

송대기

유역계획과장

전결 04/01

정정정

협조자

시행

유역계획과-909

(2008.04.01.) 접수

상하수도과-3425

(2008.04.02.)

우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번지 금강유역환경청

/

전화 042-865-0828

/전송 042-865-0829

/ cyj9291@me.go.kr

/ 공개

시·도	시·군	시설명	소재지	구분(해당란에●표)		시설용량 (톤/일)	가동 개시일 (준공일)	주관 사업명	지원 기관	정비방안							정비방안(정비대)				
				마을 하수	오수처리 시설					인근 공공 하수도에 유입처리	오수처리시설 설비 관리	처리시설 폐지	양호시설 중, 명성류 물	기타(공사 중, 명성류 물)	매설사업비 (백만원)	비고	부분 개선	전면 개량			
	광주시	계	14개소	5	9	833				0	8	0	0	0	1	5	0	7,000	전체 14개소	3	0
	광주시	개룡지구	개룡면 월암리	●		130	1994.12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림부		●							1,500	착공예정 (2009.3)	●	
		우성지구	우성면 단지리	●		102	2002.01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림부		●							700	착공예정 (2009.3)	●	
		상월지구	상월동	●		48	2002.0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	개발완료 준공일 (2007.11.30)			
		원곡지구	신봉면 동원리	●		40	1999.12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400	준공예정 (2008.3.28)			
		의당지구	의당면 황룡리	●		150	1997.03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림부		●						1,600	착공예정 (2009.3)	●		
		이물지구	정안면 이물리		●	30	2005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신수말지구	정안면 대신리		●	30	2003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안골지구	정안면 내문리 안골		●	80	1998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1,500	준공예정 (2008.6)			
		용문지구	정안면 내문리 용문		●	40	1998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500	준공예정 (2008.6)			
		초룡지구	이안면 초룡리		●	35	2006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강박말지구	우성면 신룡리		●	30	2003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400	착공예정 (2009.3)			
		작은골지구	유구읍 만천리		●	30	2004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400	착공예정 (2009.3)			
		화월지구	사곡면 화월리		●	48	2006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신대정지구	계룡면 하대리		●	40	2005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부					●					인근처리장 동할		

시·도	시·군	시설명	항수관광지 정비방안(안)(해당란에 ●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비고
			인근의 공공 시설에 유 입차량을 위 한 주차장비	관개시설 상당양호	기타(중수 중, 염성류, 폐쇄 등)	예산사면비 (백만원)	비고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정비예산(●표)						
	광주시	계	0	11	0	2,883	전체 14개소	13	0	1	5	9	0						
	광주시	계룡지구				1,050		●				●							
		우성지구				975		●				●							
		상왕지구		●				●				●							
		원골지구		●				●				●							
		의양지구				859		●				●							
		아름지구		●				●					●						
		신수암지구		●					●				●						
		만골지구		●					●				●						
		용문지구		●					●				●						
		조봉지구		●					●				●						
		광천지구		●					●				●						
척운지구			●					●				●							
		회현지구		●				●				●							
		신대정지구		●								●							

○ 2008. 6. : 추진중인 소규모 항수처리시설 개량
공사 완료
○ 2008. 4.~10. : 항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대상지
조사 및 재원함의
○ 2009. 3. : 소규모 항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착수
○ 2009. 10. : 소규모 항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완료
○ 2009. 9.~12. : 인가협의 및 사용개시신고



□ 공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보완요청내용 조치결과

공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보완요청내용 조치결과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1장 총설	○보고서 앞부분에 기존 공주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2003.8)의 계획평면도 제시	· 기존 공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3.8)의 계획 평면도 제시하였음.	계획평면도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재작성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계획은 단계별 증설에 따라 목표연도와 부합되도록 시행단계별로 표기 작성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table><tr><th>목표연도</th><th>시설용량(㎡/일)</th></tr><tr><td>2010</td><td>1,000</td></tr><tr><td>2015</td><td>1,500</td></tr><tr><td>2020</td><td>1,500</td></tr><tr><td>2015</td><td>2,000</td></tr></table> - 방류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수구역 경계 표기 - 소규모하수도 처리시설 위치 표기	목표연도	시설용량(㎡/일)	2010	1,000	2015	1,500	2020	1,500	2015	2,000	· 단계별 증설에 따라 목표연도와 부합되도록 시행단계별로 표기하였음. · 배수구역 경계 표기하였음. · 소규모하수도 처리시설 위치 표기하였음.	계획평면도 계획평면도																															
목표연도	시설용량(㎡/일)																																											
2010	1,000																																											
2015	1,500																																											
2020	1,500																																											
2015	2,000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주요인자(계획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율 등)는 최근자료(2006년)를 인용하여 보완 요청 하였으나, 2005년 자료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수정	· 계획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율 등을 최근 자료(2006년)로 보완하였음.	P166 P228																																									
	○계획인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 - 인구의 유입을 유발시키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증빙자료 수록(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 관광지, 유원지 조성사업의 고시문 등) - 계획인구 추정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 침에 따라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 로 구분하여 처리구역별, 시행단계별로 일 목요연하게 제시 작성 예) 공주시 계획인구 <table><tr><th>처 리 구 역</th><th>2010</th><th>2015</th><th>2020</th><th>2025</th></tr><tr><td>중 계</td><td>1,200</td><td>1,500</td><td>1,600</td><td>1,800</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소 계</td><td>200</td><td>300</td><td>300</td><td>300</td></tr><tr><td>자연적</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r><td>사회적</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소 계</td><td>1,000</td><td>1,200</td><td>1,300</td><td>1,500</td></tr><tr><td>자연적</td><td>500</td><td>500</td><td>500</td><td>500</td></tr><tr><td>사회적</td><td>500</td><td>700</td><td>800</td><td>1,000</td></tr></table>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중 계	1,200	1,500	1,600	1,800	△△ 처리구역	소 계	200	300	300	300	자연적	100	100	100	100	사회적	100	200	200	200	○○ 처리구역	소 계	1,000	1,200	1,300	1,500	자연적	500	500	500	500	사회적	500	700	800	1,000	· 개발사업에 대한 증빙자료 수록하였음. ·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가인구와 각종 개발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로 구분하여 처리 구역별, 시행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중 계	1,200	1,500	1,600	1,800																																								
△△ 처리구역	소 계	200	300	300	300																																							
	자연적	100	100	100	100																																							
	사회적	100	200	200	200																																							
○○ 처리구역	소 계	1,000	1,200	1,300	1,500																																							
	자연적	500	500	500	500																																							
	사회적	500	700	800	1,000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가. 자연적 증가인구 <table><tr><th colspan="2">처 리 구 역</th><th>2010</th><th>2015</th><th>2020</th><th>2025</th></tr><tr><td colspan="2">계</td><td>600</td><td>600</td><td>600</td><td>600</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00 동</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r><td>00 읍</td><td>-</td><td>-</td><td>-</td><td>-</td></tr><tr><td>00 면</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00 동</td><td>500</td><td>500</td><td>500</td><td>500</td></tr><tr><td>00 읍</td><td>-</td><td>-</td><td>-</td><td>-</td></tr><tr><td>00 면</td><td>-</td><td>-</td><td>-</td><td>-</td></tr></table> 나. 사회적 증가인구 <table><tr><th colspan="2">처 리 구 역</th><th>2010</th><th>2015</th><th>2020</th><th>2025</th></tr><tr><td colspan="2">계</td><td>600</td><td>900</td><td>1,000</td><td>1,200</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00 동</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r><tr><td>00 읍</td><td>-</td><td>-</td><td>-</td><td>-</td></tr><tr><td>00 면</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3">○○ 처리구역</td><td>00 동</td><td>500</td><td>700</td><td>800</td><td>1,000</td></tr><tr><td>00 읍</td><td>-</td><td>-</td><td>-</td><td>-</td></tr><tr><td>00 면</td><td>-</td><td>-</td><td>-</td><td>-</td></tr></table> - 사회적 유입인구 산정근거 <table><tr><th rowspan="2">처리 구역</th><th rowspan="2">개발 사업명</th><th rowspan="2">수용 인구 (인)</th><th rowspan="2">외부 유입률</th><th rowspan="2">적용 인구 (인)</th><th colspan="4">목 표 연 도</th></tr><tr><th>2010</th><th>2015</th><th>2020</th><th>2025</th></tr><tr><td colspan="2">계</td><td>6,000</td><td>20%</td><td>1,200</td><td>600</td><td>900</td><td>1,000</td><td>1,200</td></tr><tr><td>△△</td><td>□□ 택지개발</td><td>1,000</td><td>20%</td><td>200</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r><tr><td>○○</td><td>△△ 공동주택</td><td>5,000</td><td>20%</td><td>1,000</td><td>500</td><td>700</td><td>800</td><td>1,000</td></tr></table> ※ 단, 수용인구는 개발승인 고지에서 제시한 인구만 적용 - 신관처리구역 및 공암처리분구 내 도시기본 계획 상 장래 시가화예정지역으로써 예정처 리구역으로 계획한 지역의 사회적 유입인구 근거자료 제시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계		600	600	600	600	△△ 처리구역	00 동	100	100	100	100	00 읍	-	-	-	-	00 면	-	-	-	-	○○ 처리구역	00 동	500	500	500	500	00 읍	-	-	-	-	00 면	-	-	-	-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계		600	900	1,000	1,200	△△ 처리구역	00 동	100	200	200	200	00 읍	-	-	-	-	00 면	-	-	-	-	○○ 처리구역	00 동	500	700	800	1,000	00 읍	-	-	-	-	00 면	-	-	-	-	처리 구역	개발 사업명	수용 인구 (인)	외부 유입률	적용 인구 (인)	목 표 연 도				2010	2015	2020	2025	계		6,000	20%	1,200	600	900	1,000	1,200	△△	□□ 택지개발	1,000	20%	200	100	200	200	200	○○	△△ 공동주택	5,000	20%	1,000	500	700	800	1,000	· 신관처리구역 3단계 예정처리구역은 처리구역 에서 제외하였음. · 공암처리구역의 도시관리계획도 첨부하였음.	P223 첨부자료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계		600	600	600	600																																																																																																																														
△△ 처리구역	00 동	100	100	100	100																																																																																																																														
	00 읍	-	-	-	-																																																																																																																														
	00 면	-	-	-	-																																																																																																																														
○○ 처리구역	00 동	500	500	500	500																																																																																																																														
	00 읍	-	-	-	-																																																																																																																														
	00 면	-	-	-	-																																																																																																																														
처 리 구 역		2010	2015	2020	2025																																																																																																																														
계		600	900	1,000	1,200																																																																																																																														
△△ 처리구역	00 동	100	200	200	200																																																																																																																														
	00 읍	-	-	-	-																																																																																																																														
	00 면	-	-	-	-																																																																																																																														
○○ 처리구역	00 동	500	700	800	1,000																																																																																																																														
	00 읍	-	-	-	-																																																																																																																														
	00 면	-	-	-	-																																																																																																																														
처리 구역	개발 사업명	수용 인구 (인)	외부 유입률	적용 인구 (인)	목 표 연 도																																																																																																																														
					2010	2015	2020	2025																																																																																																																											
계		6,000	20%	1,200	600	900	1,000	1,200																																																																																																																											
△△	□□ 택지개발	1,000	20%	200	100	200	200	200																																																																																																																											
○○	△△ 공동주택	5,000	20%	1,000	500	700	800	1,000																																																																																																																											
제4장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기 승인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금회 하수 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비교 내용에 구체적인 변경사유 제시 ○당초 검토 요청(2008.4)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에서는 처리구역 편입예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추가로 편입을 계획한 지역(신관처리구역 내 신금처리분구 일대, 시행3단계)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기 승인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금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비교 내용 에 대한 변경사유를 제시하였음 · 편입예정지역에서 제외하였음.	P218~220 P223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4장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공주하수처리시설 내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신관처리구역 내 일부지역을 공주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보완·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수도 급수실적 및 사용실적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추정한 하수발생량의 과소 또는 과다 계산여부를 검증하여 현실에 맞는 하수량을 재산정 하였음.	P227~233
	○예정하수처리구역이 일부 소규모하수도 및 기존 간이오수처리시설 처리구역과 중첩되고, 금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동 시설의 폐쇄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설 폐쇄에 따른 행정절차 완료 후 처리구역으로 편입 계획 - 신관처리구역 및 갑사소규모하수도 처리구역 내 각각 의당소규모하수도(시설용량 150m³/일) 및 신대정간이오수처리시설(시설용량 30m³/일)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처리시설의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 선행 필요	· 처리시설 폐쇄 행정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음	첨부자료
	○유구하수처리구역 내 온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바, 온천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혹은 유구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의 연계를 결정키 위한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편의성 등에 대한 비교·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그 상세내용을 제시하되, 처리시설, 하수관거, 부대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설계획 수립 필요	·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용량이 남아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P260
	○사회복지시설(교도소 등)하수량,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는 상수급수원단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공암·신관 처리구역에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교도소 등)하수량,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는 하수량 산정시 제외하였음.	P256 P258
	○동학사하수처리구역 내 온천오수는 「동학사 제2집단지설지구 개발사업 (1992)」을 기준으로 1일 2,000m³로 계획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동 개발계획상의 오수발생량을 그대로 인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온천오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발생량을 제시하고, 추후 온천의 추가개발에 따른 온천오수량의 합리적인 추정 및 근거자료 제시 필요	· 별도의 온천수 양수시험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학사 제2집단지설지구 개발사업 (1992)」에서 적정 양수량을 6,000m³/일로 조사하여 그 이상 양수량을 늘리면 급격히 수위가 강하되므로 적정 양수량 이하로 온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P243~244
	○최근 5년간 공주시 동/읍/면별 상수급수량, 상수사용량, 급수인구, 보급률 등을 제시토록 요청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로는 급수실적 등에 따른 합리적인 상수급수원단위를 산정키 어려우므로, 2006년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실적 제시	· 최근 5년간 공주시 동/읍/면별 상수급수량, 상수사용량, 급수인구, 보급률 등을 제시하였음.	P228~229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4장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작성 例) 가. 동지역 상수급수량 및 사용량실적 <table><tr><th>년도</th><th>급수 인구 (인)</th><th>보급률 (%)</th><th>1일 급수량 (m³/일)</th><th>1인1일당 급수량 (ℓ pcd)</th><th>1일 사용량 (m³/일)</th><th>1인1일당 급수량 (ℓ pcd)</th><th>유수 수율 (%)</th></tr><tr><td>2002</td><td>1,000</td><td>55</td><td>300</td><td>300</td><td>270</td><td>270</td><td>70</td></tr><tr><td>2003</td><td>1,100</td><td>60</td><td>330</td><td>300</td><td>297</td><td>270</td><td>75</td></tr><tr><td>2004</td><td>1,200</td><td>65</td><td>360</td><td>300</td><td>324</td><td>270</td><td>80</td></tr><tr><td>2005</td><td>1,300</td><td>70</td><td>390</td><td>300</td><td>351</td><td>270</td><td>85</td></tr><tr><td>2006</td><td>1,400</td><td>75</td><td>420</td><td>300</td><td>378</td><td>270</td><td>90</td></tr></table> 나. 00 읍 상수급수량 및 사용량실적 <table><tr><th>년도</th><th>급수 인구 (인)</th><th>보급률 (%)</th><th>1일 급수량 (m³/일)</th><th>1인1일당 급수량 (ℓ pcd)</th><th>1일 사용량 (m³/일)</th><th>1인1일당 급수량 (ℓ pcd)</th><th>유수 수율 (%)</th></tr><tr><td>2002</td><td>500</td><td>35</td><td>135</td><td>270</td><td>125</td><td>250</td><td>55</td></tr><tr><td>2003</td><td>600</td><td>50</td><td>162</td><td>270</td><td>150</td><td>250</td><td>60</td></tr><tr><td>2004</td><td>700</td><td>65</td><td>189</td><td>270</td><td>175</td><td>250</td><td>60</td></tr><tr><td>2005</td><td>800</td><td>80</td><td>216</td><td>270</td><td>200</td><td>250</td><td>70</td></tr><tr><td>2006</td><td>900</td><td>85</td><td>243</td><td>270</td><td>225</td><td>250</td><td>75</td></tr></table>	년도	급수 인구 (인)	보급률 (%)	1일 급수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1일 사용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유수 수율 (%)	2002	1,000	55	300	300	270	270	70	2003	1,100	60	330	300	297	270	75	2004	1,200	65	360	300	324	270	80	2005	1,300	70	390	300	351	270	85	2006	1,400	75	420	300	378	270	90	년도	급수 인구 (인)	보급률 (%)	1일 급수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1일 사용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유수 수율 (%)	2002	500	35	135	270	125	250	55	2003	600	50	162	270	150	250	60	2004	700	65	189	270	175	250	60	2005	800	80	216	270	200	250	70	2006	900	85	243	270	225	250	75		
년도	급수 인구 (인)	보급률 (%)	1일 급수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1일 사용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유수 수율 (%)																																																																																												
2002	1,000	55	300	300	270	270	70																																																																																												
2003	1,100	60	330	300	297	270	75																																																																																												
2004	1,200	65	360	300	324	270	80																																																																																												
2005	1,300	70	390	300	351	270	85																																																																																												
2006	1,400	75	420	300	378	270	90																																																																																												
년도	급수 인구 (인)	보급률 (%)	1일 급수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1일 사용량 (m³/일)	1인1일당 급수량 (ℓ pcd)	유수 수율 (%)																																																																																												
2002	500	35	135	270	125	250	55																																																																																												
2003	600	50	162	270	150	250	60																																																																																												
2004	700	65	189	270	175	250	60																																																																																												
2005	800	80	216	270	200	250	70																																																																																												
2006	900	85	243	270	225	250	75																																																																																												
제5장 하수관거계획	○관거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지역 도면 제시 ○관거 설치시기와 처리구역 편입 시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수정 - 예정처리구역 편입시기와 하수관거 설치시기가 부합되도록 수정 - 차집관거 시설현황 (306쪽↔383쪽) 및 오수 관거 신설연장 상이 (368쪽↔381쪽) ○하수배재방식을 분류식으로 계획하였는바, 기존 합류식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연장포함)을 시행단계별/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작성 例) <table><tr><th>처리구역</th><th>구 분</th><th>2006</th><th>2010</th><th>2015</th><th>2020</th><th>2025</th></tr><tr><td rowspan="2">00처리구역</td><td>기존 합류식관거 연장(m)</td><td>100</td><td>-</td><td>-</td><td>-</td><td>-</td></tr><tr><td>활용될 우수관거 연장(m)</td><td>-</td><td>50</td><td>50</td><td>-</td><td>-</td></tr></table>	처리구역	구 분	2006	2010	2015	2020	2025	00처리구역	기존 합류식관거 연장(m)	100	-	-	-	-	활용될 우수관거 연장(m)	-	50	50	-	-	· 관거개량계획 사업지역을 제시하였음. · 수정하였음. · 수정하였음. · 합류식관의 활용계획(연장포함)을 시행단계별/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하였음.	P377 P359																																																																												
처리구역	구 분	2006	2010	2015	2020	2025																																																																																													
00처리구역	기존 합류식관거 연장(m)	100	-	-	-	-																																																																																													
	활용될 우수관거 연장(m)	-	50	50	-	-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6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계획시 다음사항을 반영 -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35,000m³/일, 기존시설) · 일최대 하수발생량(2025년)을 30,856m³로 계획함에 따라, 약 4,000m³/일 가량의 여유시설용량이 발생하게 되므로 인근 신관하수처리구역의 일부지역을 조정, 공주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신설예정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7,000m³/일, 2015년)을 최소한으로 계획하되, 처리구역 조정방안에 따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비교 검토내용(경제성, 유지관리편의성 등) 제시 - 유구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3,400m³/일, 기존시설) · 일최대 하수발생량(2025년)을 3,668m³로 계획한 점과,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일평균유입하수량 2,800m³, BOD 69.4mg/ℓ, 2007년 현재)을 감안, 무리한 시설계획이 되지 않도록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수관거정비를 선행하여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필요 - 동학사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1,800m³/일, 기존시설) ·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일평균유입하수량 1,200m³, BOD 50.0mg/ℓ, 2007년 현재)을 감안, 무리한 시설계획이 되지 않도록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천오수로 인한 저농도 유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정비를 선행하여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필요 - 공암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1,800m³/일, 기존시설) ·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일평균유입하수량 1,200m³, BOD 65.9mg/ℓ, 2007년 현재)을 감안, 무리한 시설계획이 되지 않도록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수관거정비를 선행하여 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필요	· 공주처리구역 실제 운영자료에 의한 생활오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거주자 이외의 많은 유동인구(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는 공주대, 공주교대 등의 학생 및 교직원수와 대표적인 백제권 관광도시로서 관광인구에 대한 영향 등)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지하수사용량을 고려하여 하수량을 재산정한 결과 일최대 하수발생량(2025년)을 33,101m³/일로 계획하였음. · 유구처리구역 하수량 재산정 결과 일최대 하수발생량(2025년)이 3,573m³/일로 계획되어 증설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2007년 11월이후 우수토실을 폐쇄하여 일평균 유입하수량 1,142m³/일 BOD 115mg/L 유입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7년 11월이후 우수토실을 폐쇄하여 일평균 1,288m³/일 BOD 115mg/L가 유입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P255 P257 P473~474 P470~471
제7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2007.10)’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에 대하여 시행단계별, 처리시설별로 재이용 용도와 재이용량 제시	· 시행단계별, 처리시설별로 재이용 용도와 재이용량 제시하였음,	P591

구 분	보완 요청 내용	조 치 결 과	비 고
제9장 재정계획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명과 부과대상하수량 제시 - 하수관거 내용 포함 - 개발사업과 연관된 경우 공주시와 개발사업 자 간 협의문서 포함	· 협의문서 포함하였음.	첨부자료
제11장 소규모하수도 정비계획	○소규모하수도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연취락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므로 일최대 오수원단 위는 지하수 포함 200ℓpcd로 수정토록 보완 요청하였으나, 오수원단위를 과다산정 하였으 므로 수정하고, 시설용량 하향조정 - 장기소규모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소규모하수 도에 적용 ○현재 공주시 관광축제팀이 운영, 관리 중인 ‘운 암’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할 경우 처리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사항을 제시하고, 금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소규모하수도로 표기 - 동 처리시설을 현재와 같이 개인하수도로 관 리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제외 ○상신, 장기소규모하수도 처리구역 중 일부지역 은 당초(2008.4) 검토를 요청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있지 않았고, 현 장조사 시에 언급이 없었음에도 동 지역을 추 가로 처리구역 편입을 계획하였는바, 이를 제 외하고 인구 및 처리시설 용량 하향조정	· 장기 소규모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소규모하수 도에 적용하였음. · 운암 소규모하수도에 대해 2011년이후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이관할 계획이며, 기존 소규모하수 도로 표기하였음. · 장기처리구역의 추가지역은 학교부분이 누락 된 것으로 편입하였음. · 상신처리구역의 추가지역은 제외하였음	P830 계획평면도 P863 P865
기타	- 용어수정 · 하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마을하수도 → 소규모하수도 - 표 내 합계오류 수정 (15쪽)	· 수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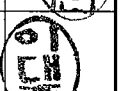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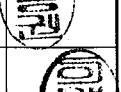
☐ 과업 참여자명단

과업 참여자 명단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주)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유 대 현 (인)

분	아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종류	회사	비고
사업총괄책임자			2006.08.21 ~ 2008.11.06	채완종	601010-1450823	92138020018Y 상하수도기술사	건양	
상하수도	분야책임		2006.08.21 ~ 2008.11.06	공병덕	571208-1350820	91135020011V 상하수도기술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한진수	561010-1448813	93140010100R 상하수도기술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김상웅	621018-1351112	99159020023Z 상하수도기술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김교신	710503-1148724	97204130279Q 토목기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이대주	750326-1453010	학력기술자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홍종구	750501-1380516	학력기술자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박승도	770203-1482315	학력기술자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오미선	821215-2380215	04201120173H 토목기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남궁영선	400901-1226819	학력기술자	충청	
	설계		2006.08.21 ~ 2008.11.06	전수영	761004-2390033	학력기술자	충청	
	설계		2006.08.21 ~ 2008.11.06	송창학	651003-1177924	학력기술자	충청	
토목	분야책임		2006.08.21 ~ 2008.11.06	이명철	630810-1400538	90205120107S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정종권	661124-1009722	학력기술자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이병현	550603-1025012	991580100080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문순한	410309-1058337	93139010066J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양	
	설계		2006.08.21 ~ 2008.11.06	최진호	500307-1005616	97149020018S 토목구조기술사	건양	

분	아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종류	회사	비 고
토	목	설	계	2006.08.21 ~ 2008.11.06	윤 상 일	770423-1380511	95405123222D 측량기능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조 국 희	751026-1380512	학력기술자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임 진 섭	750305-1388822	00202120532S 토목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신 동 혁	740324-1351810	99205120137H 토목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최 창 성	760504-1380813	00202120552W 토목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방 승 만	740422-1402725	97205131001Z 토목기사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조 정 현	730609-1398821	02202120135L 토목기사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김 대 수	790115-1462117	학력기술자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서 형 욱	731227-1815227	98207130114S 토목기사	충청	
도시계획		분야책임		2006.08.21 ~ 2008.11.06	김 재 영	700505 1018957	88405024910T 토목제도기능사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창 용	700924-1454614	97204130228F 토목기사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여 상 균	560303-1005818	91135020030Y 도시계획기술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조 욱 현	660217-1047315	04172010114S 도시계획기술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최 점 규	640408-1551132	91207020119F 도시계획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정 구 영	780325-1379711	96405123514N 측량기능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박 광 태	340507-1010611	학력기술자	충청	
기계/전기		분야책임		2006.08.21 ~ 2008.11.06	조 경 래	620110-1777611	80307802422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민 철	600809-1251614	97205010076Y 전기공사기사	건양	

분 야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종류	회사	비 고
기계/전기	설 계	2006.08.21 ~ 2008.11.06	김 영 일	650625-1471817	92205020176B 열관리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상 호	730420-1068411	학력기술자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정 명 호	741223-1815417	91402040025T 기계제도기능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광 현	760205-1056430	95207070463V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윤 종 일	680730-1063115	학력기술자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황 규 진	660207-1525010	93202010221Q 전기공사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김 대 선	701024-1347538	95202170073I 전기공사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제 욱	511225-1804314	98154010004H 건설기계기술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김 한 치	450902-1074213	79117000625 발송배전기술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이 경 배	710630-1804328	95204120058Y 전기공사기사	건양	
환 경	분야책임	2006.08.21 ~ 2008.11.06	이 종 혁	700131-1565814	94204050096M 수질환경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김 태 하	651215-1398849	90205120087F 수질환경기사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조 규 성	660417-1457221	99157100035L 수질관리기술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황 광 익	651228-1351718	90203120131E 대기환경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임 은 숙	710701-2351214	95201120217A 수질환경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송 은 정	741207-2391113	97204120578T 수질환경산업기사	건양	
	설 계	2006.08.21 ~ 2008.11.06	장 병 인	761018-1810611	학력기술자	충청	
	설 계	2006.08.21 ~ 2008.11.06	강 영 철	781010-1360811	학력기술자	충청	